#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공회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28.>

## 제2장 등록 및 수강신청

- 제2조(학점등록) ① 8학기를 이수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03.01.. 2017.09.20.. 2019.01.22.. 2020.09.23.〉
  - 1. 9학점 초과 수강신청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7학점 이상 9학점 이하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액의 1/2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4학젂 이상 6학점 이하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액의 1/3을 납부하여야 한다.
  - 4. 〈삭제 2007.03.01〉
  - 5.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액의 1/6을 납부하여야 한다.
  - 6. 수강신청 의무가 없는 재학생의 등록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09.23.>
  - ②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제3조(수강신청의무) 학생은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신청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9.01.22., 2020.09.23.>
  - 1.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
  - 2. 8학기에 교환학생을 마친 자.
  - 3. 9학기에 휴학중인 상태에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 제4조(수강신청의 지도) 학생은 소속학부(과) 지도교수로부터 교과목 이수, 수강신청 등에 필요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의 2(부모강의 수강신청 제한)** ① 부모의 강의를 수강신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부모의 강의를 수강신청한 경우, 담당교수는 해당 자녀에게 수강신청을 변경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 교무처 및 소속학과(부)의 학과(부)장에게 수강신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9.>
  - ③ 자녀의 수강신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임교원은 전임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비전임교원은 다음 학기 재위촉 또는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9.01.22.]

- 제5조(수강신청절차)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해당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9., 2011.04.06>
- **제6조의 1(수강신청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최대 19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 정 2007.03.01>
  - ② 학칙 29조에 의거 직전학기에 17학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은 22학점(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 ③ <삭제 2007.03.01.>
- 제6조의 2(수강신청학점 이월) 19학점에 미달된 잔여학점은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다. 학기당 3학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고 수강신청 시 학기당 4학점까지 사용할수 있다. 〈신설 2015.01.28.〉
- **제7조(재수강 및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필수과목은 재수강하여 야 한다. <개정 2007.03.01., 2015.01.28.>
  - ② C+등급 이하 또는 NP등급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재수강한 등급제 과목의 취득성적은 A0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1.28., 2016.12.21., 2017.07.27. 2023.12.27>
  - ③ 재수강이 아닌 방식으로 이미 취득한 과목을 다시 신청하였을 경우 이중 취득으로 간주하며 다시 신청한 과목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7.03.01>
  - ④ <삭제 2007.03.01.>
  - ⑤ <삭제 2007.03.01.>
  - ⑥ 동일 교시에 중복 수강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1.>
  - ⑦ 〈삭제 2022.05.25.〉
  - ⑧ 재수강 대상 과목이 교육과정개편 등의 이유로 폐강되어 재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해당 과목은 열림교양대학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정한다. 〈신설 2016.12.21.〉
  - ⑨ 〈신설 2016.12.21.〉〈삭제 2017.07.27.〉
  - ① 재수강은 학기당 9학점, 재학 중 24학점으로 제한하며, 동일과목에 대한 재수강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단, 학점을 미취득한 과목은 제한 학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2.21.〉
  - ① 재수강을 통해 이수한 과목명 옆에는 R(Retake)을 표기한다. <신설 2016.12.21.>
- **제8조(수강신청과목의 변경 및 취소)** ①수강신청한 과목은 소정의 수강과목 변경기간에 한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 ②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강신청변경기간에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전산에 직접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기간 이후에 학생 임의로 수강신청하지 않

- 은 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철회과목은 2과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 당 이수학점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1.03.09., 2011.04.06.>

## 제 3 장 휴학과 복학

- **제9조(휴학의 종류, 휴학신청 예외)** ①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03.01. 2021.08.25. 2023.06.21>
  - 1. 일반휴학 : 질병, 기타 특별한 사정 등으로 당해 학기 수학이 불가능하여 휴학하는 자
  - 2. 군 입대휴학 : 군 입대로 인하여 휴학하는 자
  - 3.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휴학 〈신설 2013.01.16.〉
  - 4. 창업을 위한 휴학 〈신설 2021.08.25.〉
  - ② 신입학생,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군입대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하는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 1.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개정 2021.08.25.>
    -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3.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사유가 있을 때
  - ③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은 휴학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06.21.〉
- **제10조(휴학기간)** ① 일반휴학기간은 재학 기간 중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16. 2023.06.21>
  - 1. 군 입대휴학으로 인한 기간
  - 2.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휴학 기간
  - 3. 자녀(만8세 이하)를 양육하기 위한 휴학 기간
  - 4. 창업을 위한 휴학 기간 <개정 2015.01.28.>
  - 5. 장기 입원이나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상해에 의한 휴학기간 <개정 2020.08.19.>
  - ② 군 입대휴학은 군복무기간이 종료되는 기일이 속하는 학기말까지로 한다.
  - ③ 편입생의 일반휴학은 5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06.21.>
  - ④ 임신, 출산, 육아 휴학의 휴학 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1.16.>
    - 1. 임신, 출산 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 자녀(만8세 이하)를 양육하기 위한 휴학은 최대 6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남자는 2학기까지로 한다.
  - ⑤ 창업을 위한 휴학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01.28.〉
  - ⑥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을 모두 소진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며, 학기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4.〉

- 제11조(휴학절차)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휴학사유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03.01., 2009.03.01.〉
  - ②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매 학기 지정기간
    - 2. 〈삭제 2007.03.01.〉
    - 3. 군 입대휴학자는 입영일자 이전
  - ③ 휴학기간 경과 후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1.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개정 2021.08.25.>
    -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④ 일반휴학중인 자가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 반드시 입영일 전에 일반휴학을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⑤ 미반납 도서 또는 기자재가 있거나 연체료 또는 수리비가 미납되어 있는 경우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08.25.〉
- 제12조(군입대휴학 취소) 군입대 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조치 1주일이내에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03.01.>
- 제13조(복학) ① 일반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지정된 기간 중에 복학원을 교무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3.01.>
  - ② 군입대 휴학자가 복학하는 경우 복학원을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3.01.>
  - ③ <삭제 2007.03.01.>
  - ④ 군제대 일자로 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못한 자가 당해 학기에 복학을 원할 경우 학기초 수업일수 3주 이내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03.01.>
- 제14조(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①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자퇴 또는 제적되는 경우 반환금액은 휴학신청일자를 기준하며, '학교수업료및입학금반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다. 〈신설 2007.03.01.〉
  - 1. 30일 경과전: 등록금액의 5/6
  - 2. 30일 경과 60일 이전: 등록금액의 2/3
  - 3. 60일 경과 90일 이전: 등록금액의 1/2 <개정 2013.10.16>
  - 4. 90일 경과: 반환하지 않음.
  - ② 일반휴학자의 등록 <개정 2007.03.01.>
    - 1. 미등록 일반 휴학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2. 등록을 마치고 개강전에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면제한다.2의 1. 등록을 마치고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에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
    - 2의 2. 등록을 마치고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에 휴학한 자

- 는 2/3에 해당하는 등록금액을 면제한다.
- 2의 3. 등록을 마치고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에 휴학한 자는 1/2에 해당하는 등록금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3.10.16>.
- 3. 등록을 마치고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의 내용 삭제 <2007.03.01.>
- ③군입대휴학자의 등록
  - 1. 미등록 군입대휴학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2. 등록을 마치고 군입대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휴학당시의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복학할 때 면제된다. 단, 휴학한 학기의 성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복학할 때 등록 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4 장 퇴학과 제적

- 제15조(자원퇴학)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3.01.〉
  - ② <삭제 2007.03.01.>
  - ③ 미반납 도서 또는 기자재가 있거나 연체료 또는 수리비가 미납되어 있는 경우 자원 퇴학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08.25.〉
- 제16조(제절) 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은 제적한다.
  - ① 〈삭제 2007.03.01.〉
  - ② 〈삭제 2007.03.01.〉
  - ③ 소정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④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강신청하지 않은 자. 〈개정 2007.03.01.〉
  - ⑤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 ⑥ 타교에 입학한 자.
  - ⑦ <삭제 2007.03.01.>
  - ⑧ 〈삭제 2007.03.01.〉
  - ⑨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통산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제 5 장 재 입 학

- 제17조(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전 학과(부의) 재입학 가능 여석은 해당 융합자율학부의 재입학 가능 여석으로 한다. 〈개정 2020.08.19.〉
- **제18조(허가 및 절차)** ① 재입학은 학과(부)에서 학과(부)장이 정한 교수 2인 이상의 심사 의견을 들어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8.25.>
  - ② 제적 후 최소 1학기가 경과한 후에 재입학 신청 할 수 있으며 성적불량으로 2회 이

상 제적된 경우는 최소 4학기가 지나야 재입학을 신청 할 수 있다.

- ③ 재입학한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신설 2007.03.01.〉
- ④ 제적 당시 소속 학과(부)가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그 학과(부)의 재적생이 존재하더라도 개편된 융합자율학부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이전 학과(부)에 대한 해당 융합자율학부는 다음의 표와 같다. 〈신설 2011.03.09.〉

이전 학과(부)	해당 학부	
신학과, 기독교학과, 영어학과, 일어일본학과, 중어중국학과	인문융합자율학부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사회과학부, 유통정보학과, 경영학부	사회융합자율학부	
신문방송학과, 디지털컨텐츠학부, 디지털컨텐츠학과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전산정보학과, 정보통신학과,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	IT융합자율학부	
보통신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글로컬IT학과		

제19조(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학금은 재입학연도의 신입생 입학금으로 한다.

제20조(학점인정) 재입학생의 졸업은 재입학 이전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사정한다.

## 제 6 장 전 과

- 제21조(기준) 전과는 받아들이는 당해 학년도 학과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03.01.>
- 제22조(절차) ①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두 학기 이상 수료 후 신청할수 있다. 전과를 신청할수 있는 자는 취득학점이 34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과할 학과의 전공과목을 두 과목 이상 수강하고 두 과목의 평점이 각각 B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3.01., 2009.03.01.〉
  - ②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전과신청서, 성적증명서 및 학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출입 학부(과)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3.01.〉
  - ③ 전입하는 학과는 별도의 기준을 두어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03.01.>
- 제23조(이수과목 및 학점)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소정의 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전출학과에서의 과락한 필수과목은 재수 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4조(이수연한)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 제 7 장 출석과 결석

- **제25조(출결)** ① 교과목별 결석허용 기준은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7.20.〉
  - ② <개정 2016.07.20.><삭제 2017.10.25.>
  - ③ 강의 시작 후 20분 이전의 출석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20분 이후의 출석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그 시점에 대한 기준은 담당교원이 변경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5.〉
  - ④ 강의 중에 퇴실할 경우 담당교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조퇴로 처리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퇴실한 경우 결석으로 간주하고, 추가로 성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0.25.〉
  - ⑤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신설 2017.10.25.〉
  - ⑥ 담당교원은 결석, 지각, 조퇴 여부를 성적 산정에 반영한다. 〈신설 2017.10.25.〉

## 제26조(결석계 제출) <삭제 2007.03.01.>

제27조(출석인정) ① 아래 각호에 명시된 사유에 의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요청서와 증빙서류를 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인정요청서와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일 이전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03.01., 2017.05.31., 2021.09.15. 2024.04.24〉

	11.0		
호	사유	인정기간 (휴업일 포함)	비고 (휴업일 포함)
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7일	
2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5일	
3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상해	입원확인서에 표기된 기간	최장 14일, 최대 1회
4	통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상해	1일	최대 2회
5	생리공결	1일	월 1회 학기당 최대 4회 종합정보시스템 당일 신청자에 한함
6	징병검사	통지서에 표기된 기간	
7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통지서에 표기된 기간	·인정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 ·성적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 우를 금함
8	교육실습	해당 기간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
9	8학기 이상 재학 중 취업	해당 기간	나눔융합전공대학장이 승인 한 경우에 한함
10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치료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최장 14일, 최대 1회
11	장애학생의 병증 악화로 인한 요양 치료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최장 14일, 최대 1회
12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승인 기간	최장 14일

- 가. 〈삭제 2017.05.31.〉
- 나. 〈삭제 2017.05.31.〉
- 다. 〈삭제 2017.05.31.〉
- 라. 〈삭제 2017.05.31.〉
- 마. 〈삭제 2007.03.01.〉
- 바. <삭제 2007.03.01.>
- 사. 〈삭제 2007.03.01.〉 단서문구〈삭제 2007.03.01.〉
- 아. 〈신설 2007.03.01..〉<삭제 2017.05.31.〉
- 자. 〈신설 2015.01.28.〉〈삭제 2017.05.31.〉
- 차. 〈신설 2016.10.19.〉〈삭제 2017.05.31.〉
- ② <삭제 2007.03.01.>

## 제8장 시험과 성적

제28조(시험) ① 각 학과목의 시험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및 기타 시험으로 구분한다.

- ②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 ③ 추가시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시험 전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요청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7.03.01.>
  - 1. 신병으로 인하여 응시할 수 없는 경우(진단서 첨부)
  - 2. 병역관계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징병검사통지서 사본, 소집영장 사본)
  - 3.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사망진단서)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제29조(성적)** ① 성적평가는 다음의 원칙에 준하여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4.05.28.>

- 1. 모든 교과목의 평가는 A등급이 30%, A와 B의 등급의 합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별표 3>의 성적등급 부여 예시를 활용한다. <개정 2022.10.19. 2023.12.27>
- 2.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과목
  - 가. 성적평가를 P(합격)/NP(불합격)으로 평가하는 과목 <개정 2023.06.21.>
  - 나.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과목
  - 다.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과목
  - 라. 해외교육프로그램 과목 중에서 해외교육프로그램 주임교수회의에서 정한 과목
  - 마. 평생교육과정 관련 과목
- ② Do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 중간고사를 마치고 군입대 휴학한 자의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당해 학기의 성적을 100% 환산하여 산출한다. 단, 휴학일로부터 종강까지의 수업결손일수가 수업일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성적보류(I)학점의 경우 매학기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까지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성적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F또는 NP으로 처리한다. 단, 방학 중 수업이 필요한

- 경우 매학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3.01., 2010.03.03., 2014.05.28., 2020.09.23. 2023.06.21>
- ⑤ 전체 평균평점의 계산은 각 과목의 평점합계를 신청학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신설 2009.03.01.〉
- ⑥ 백분율의 계산은 백분율의 계산은 100-((4.5-평균평점)×10) 의 수식을 적용한다. <신설 2009.03.01.><개정 2013.04.17.>
- ⑦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 교과목의 경우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03.01.〉
- ⑧ ①항 내지 ⑦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성적평가방법 및 분포비율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8.19.>

제**29조의 2(학점포기)** 〈신설 2007.03.01.〉〈삭제 2016.12.21.〉

- 제29조의 2(부모강의 성적평가) ① 자녀가 교과과정 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담당교수는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부)장이 최종 성적 부여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자녀의 성적산출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임교원은 전임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비전임교원은 다음 학기 재위촉 또는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1.22.]

- 제30조(성적취소) 성적 확정 이후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06.21.>
  - 1. 〈삭제 2023.06.21.〉
  - 2. 〈삭제 2023.06.21.〉
  - 3. 〈삭제 2023.06.21.〉
  - 4. <삭제 2023.06.21.>
- 제31조(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성적처리기간 중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학기 예정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개정 2007.03.01., 2016.12.21.〉
- 제32조(성적정정) ① 학과목 담당교수에 의해 교무처에 제출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수 없다. 다만, 착오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담당교수는 성적정정을 요청할수 있다. 성적이 발표된 해당 학기 종료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사유가 기재된 성적정정원을 답안지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무처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정정을 허가할수 있으며, 졸업사정 이후에는 성적을 정정할수 없다. 〈개정 2016.12.21.〉
  - ② 전임교원의 성적정정 여부는 전임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신설 2018.02.21.〉
  - ③ 비전임교원의 성적정정 여부에 따라 다음 학기 재위촉 또는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 제9장 학사경고

- **제33조(학사경고)** ① 당해 학기 성적이 평점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매 학기말에 학사경고를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7.03.01.〉
  - ② 학사경고의 경우, 그 사실을 본인과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에게 통고하고 학적부 상벌란에 기재한다. <개정 2015.01.28., 2016.12.21., 2020.04.22.>
  - ③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이나 지도교수는 면담을 통해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이 학생상 담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한 학습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신설 2016.12.21.〉
  - ④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한다. <신설 2016.12.21.★개정 2020.04.22.>
  - ⑤ 수업년한 초과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12.21.〉
  - ⑥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의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그 다음 학기 종강일 이내에 학생상 담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학사경고 횟수를 누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4.22.〉 〈개정 2022.10.19.〉
- 제34조(학사경고 제적)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한다.

# 제10장 졸업요건

- 제35조(시행구분) ① 학과(부) 소속 졸업예정자의 졸업요건은 〈별표 1〉, 융합자율학부 전 공 소속 졸업예정자의 졸업요건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1.03.09., 2015.01.28., 2021.04.21.〉
  - ② 〈개정 2007.03.01.〉〈삭제 2011.03.09.〉
  - ③ 〈개정 2007.03.01.〉〈삭제 2011.03.09.〉
  - ④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과(부) 및 융합자율학부 소속 전공의 졸업요건에 따른다. <개정 2015.01.28., 2021.04.21.>
  - ⑤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08.25.〉
    - 1.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자
    - 2. 도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3. 분실 도서를 변상하지 않은 자
    - 4. 기자재를 반납하지 않은 자
    - 5. 기자재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6. 기자재 수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7. 분실 기자재를 변상하지 않은 자

제36조(논문제목 제출시기) 〈개정 2007.03.01.〉〈삭제 2015.01.28.〉
제37조(논문 지도교수) 〈신설 2007.03.01.〉〈삭제 2015.01.28.〉
제38조(논문의 분량) 〈삭제 2007.03.01.〉
제39조(논문제출) 〈삭제 2007.03.01.〉
제40조(논문심사위원 위촉) 〈삭제 2007.03.01.〉
제41조(논문심사) 〈삭제 2007.03.01.〉
제42조(논문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삭제 2015.01.28.〉
제43조(졸업시험 등) 〈삭제 2007.03.01〉

# 제11장 학적부 기재사항

**제44조(학적부 기재)**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인적사항, 학사사항, 성적 및 상벌을 기재한 다. 일단 기재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 ② 학적부 기재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적부와 주민등록 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정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3.>
  - 1. 개명(주민등록초본) <개정 2020.09.23.>
  - 2. 〈삭제 2020.09.23.〉
  - 3. 주소 변경(주민등록등본)
  - 4. 주민등록번호변경(주민등록초본)

# 제12장 제 증명 발급

제45조(학적 및 등록관계 증명서의 종류) ① 본 대학교 교무팀에서 발행하는 학적관계증 명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3.01>

- 1.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및 수료증명서
- 2. 재적증명서 및 제적증명서
- 3. 졸업증명서
- 4. 졸업예정증명서
- 5. 성적증명서
- 6. 기타 학적에 대한 제 증명서
- ② 본 대학교 회계팀에서 발행하는 등록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7.03.01.〉
- 1. 교육비납입증명서

제46조(신청) 증명서의 발급은 본 대학 소정의 증명발급신청서에 의한다.

제47조(발급기간) 신청한 증명은 즉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장 전공 선택 [신설 2018.02.21.]

제48조(전공 이수방식) 다음 각 호의 전공 이수방식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 1. 주전공과 부전공
- 2. 복수1전공과 복수2전공
- 3. 삭제 <개정 2019.07.31.>

[본조신설 2018.02.21.]

- 제49조(전공 신청) ① 4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제48조의 전공 이수방식을 통해 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소속 융합자율학부의 전공을 반드시 하나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31.〉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속 융합자율학부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교양 및 전공탐색 과목만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9.07.31>
  - ③ 삭제 <개정 2019.07.31>

[본조신설 2018.02.21.]

## 제14장 내규 [신설 2020.10.21.]

**제50조(내규)** 각 융합자율하부, 전공 및 학부(과)별 학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21.]

# 제 15장 조기졸업 [신설 2022.10.19.]

- 제51조(신청자격)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 전학년 누적 평점평균이 4.2이상인 자는 6학기 또는 7학기에 조기 졸업할 수 있다.
  -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 1. 편입학생 또는 재입학생
    - 2. F 또는 NP 학점이 있는 학생
    - 3.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이 있는 학생
    - 4.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③ 다음 각 호의 취득 학점은 조기졸업심사를 위한 요구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학칙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고교·대학 연계 프르그램에서 취득한 학점
    - 2. 학칙 제27조제7항에 의하여 군이러닝으로 취득한 학점
    - 3. 교환학생 등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4.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만 조기졸업심사를 위한 요구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22.12.21.>

제52조(조기졸업숭인신청)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6학기초 또는 7학기초 정해진 기

간내에 조기졸업승인신청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조기졸업 탈락자의 등록) 조기졸업을 신청하였으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심사에 탈락한 학생은 졸업 요구 학점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5년 3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6년 3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7년 3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중 제8장 제34조1항은 1997학년도의 제2학년생부터 적용한다. 단, 1997학년도에 제3학년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8년 3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1월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는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의 학칙을 적용하며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학년도의 규정을 따른다.
- ③ (경과조치) 제9장(연계전공)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0조, 제33조, 제34조 ①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학년도 의 규정을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6조 ⑨항은 200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6월 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 7조 1항의 재수강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2007학년도 1학기까지 취득 한 성적에 대해서 중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7월 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4월 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1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2014년 5월 28일 개정 세칙은 2013년 9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삭제 2017.07.27.〉
- ③ (경과조치) 제29조의2(학점포기)는 조문 삭제 후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④ (경과조치) 제7조(재수강 및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⑩항의 재학 중 재수강을 24학점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에게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7.27.〉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별표1〉의 신학과의 졸업요건 적용은 2017학년도 전기 졸업자(수료생 포함)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조치) 〈별표1〉의 신문방송학과 졸업요건 적용은 2016학년도 전기 졸업자(수료생 포함)부터 시행한다.
- ④ (경과조치) 〈별표1〉의 영어학과 졸업요건 적용은 2016학년도 후기 졸업자(수료생 포함)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5월 3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7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20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5조(출결) 제5항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48조, 제49조는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에게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개정 이전 시행세칙을 적용하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2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7월 3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4월 2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2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5월 2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제27조 제1항 5호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6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2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별표 1〉 학과(부) 졸업요건표 〈개정 2021.04.21. 2023.01.18. 2023.12.27〉

학과명	졸업학점 외 졸업요건	비고	
신학과	졸업학점 외 요건없음		
	TOEIC 750점, TOEFL(PBT) 567점, TOEFL(CBT) 227점, TOEFL(IBT) 87		
d ol glaj	점, TEPS 633점, NewTEPS 345점, IELTS 5.5등급, TOEIC Speaking 6등		
영어학과	급(140), TEPS Speaking 3+등급, OPIc IM등급 이상		
	자격증 대체에 관한 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함		
	JPT 550점 이상 또는 JLPT 2급 이상 (N2)	2011학번까지	
일어일본학과	자격증 대체에 관한 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함		
272674	JPT 700점 이상 또는 JLPT 1급 이상 (N1)	2012학번부터	
	자격증 대체에 관한 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함		
중어중국학과	HSK(PBT) 5급, HSK(IBT) 5급 이상 또는 자체시험 60점 이상		
	자격증 대체에 관한 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함		
사회복지학과	졸업학점 외 요건 없음		
사회과학부	졸업학점 외 요건 없음		
신문방송학과	졸업학점 외 요건 없음		
경영학부	졸업학점 외 요건 없음		
디지털컨텐츠 학과 졸업작품		졸업작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함	
컴퓨터공학과	졸업학점 외 요건 없음		
소프트웨어공 학과	졸업학점 외 요건 없음		
정보통신공학 과	졸업학점 외 요건 없음		
정 학과권장 국제공인자격증(예: OCJD, OCWCD, MCSD, OCP 보 등)이나 정보처리기사 취득 또는 현지 프로젝트의 결과물 및 영문보고서, 교환학생 영문보고서 , 인턴십 결과보고서, 졸 업 프로젝트 보고서 중 과정 해당 자격		정보활용 택1	

〈별표 2〉 융합자율학부 소속 전공 졸업요건표 〈신설 2021.04.21.〉 〈개정 2023.01.18. 2023.12.27〉

전공명	졸업학점 외 졸업요건	비고
기독교문화전공	졸업학점 외 요건없음	
	TOEIC 750점, TOEFL(PBT) 567점, TOEFL(CBT) 227점,	
	TOEFL(IBT) 87점, TEPS 633점, NewTEPS 345점, IELTS 5.5등	
영어학전공	급, TOEIC Speaking 6등급(140), TEPS Speaking 3+등급, OPIc	
	IM등급 이상	
	자격증 대체에 관한 사항은 전공 내규로 정함	
일어일본학전공	JPT 550점 이상 또는 JLPT 2급 이상(N2) 자격증 대체에 관한 사항은 전공 내규로 정함	
중어중국학전공 HSK(PBT) 5급, HSK(IBT) 5급 이상 또는 자체시험 60점 이상 자격증 대체에 관한 사항은 전공 내규로 정함		
사회복지학전공	졸업학점 외 요건 없음	
사회학전공	졸업학점 외 요건없음	
경제학전공	졸업학점 외 요건없음	
정치학전공	졸업학점 외 요건없음	
경영학전공	졸업학점 외 요건없음	
신문방송학전공	졸업학점 외 요건없음	
디지털콘텐츠전공	졸업작품	졸업작품에 관한 사항 은 학과 내규로 정함
컴퓨터공학전공	졸업학점 외 요건없음	
소프트웨어공학 전공	졸업학점 외 요건없음	
정보통신공학전공	졸업학점 외 요건없음	
글로컬IT전공	졸업학점 외 요건없음	

<별표 3> 성적등급 부여 예시 <신설 2023.12.27.>

성적 등급	전체 의미	이해력	설명력	<u> </u>
A+	우수 (excellent)	질문이 의도하는 내용을 명확 하게 이해하고 있고, 스스로의 언어로도 표현이 가능함	질문에 대해 매우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하고 있음	질문에서 제시하는 기본 개념 이나 맥락에 관해, 자료나 예
A0		질문이 의도하는 내용을 명확 하게 이해하고 있음	질문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이 고 설득력 있게 답하고 있음	시를 매우 적절하게 활용하여 답하고 있음
В+	양호 (good)	질문이 의도하는 내용을 전반 적으로 이해하고 있음	질문에 대해 나름의 논리를 구축하여 설득하고자 함	질문에서 제시하는 기본 개념 이나 맥락에 관해, 자료나 예
ВО		질문이 의도하는 내용을 전반 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 하고자 함	시를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하 여 답하고 있음
C+	만족 (satisfactory)	질문이 의도하는 내용을 부분 적으로 이해하고 있음	질문에 대해 설득하고자 하지 만 논리적 구조가 약함	질문에서 제시하는 기본 개념 이나 맥락과 부분적으로만 관
C0		질문이 의도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함	질문에 대해 설득하고자 하지 만 논리적 구조가 보이지 않음	계있는 자료나 예시를 활용하 여 답하고 있음
D+	이수	질문이 의도하는 내용에 관해 다소 잘못된 이해가 있음	질문에 대해 설득하고자 하지 만 논리적 구조가 없는 서술 로만 채워져 있음	질문에서 제시하는 기본 개념 이나 맥락과 관계없는 자료나
D0	(passing)	질문이 의도하는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질문에 대해 설득하고자 하지 만 논리적 구조가 거의 보이 지 않음	예시를 활용하여 답하고 있음
F	이수 실패 (fail)	질문이 의도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질문에 대해 설득하고자 하지 만 논리적 구조가 보이지 않음	질문에서 제시하는 기본 개념 이나 맥락에 관해, 자료나 예 시를 활용하여 답하지 못하고 있음